대법원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 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강등)('이 사건 처분')을 받 아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 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법령상 근거 없이 '다 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할 수 없고, 원고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 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양정에 있어 재 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 사안의 개요

■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 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당시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는 2021. 2. 1.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보유조 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이 주택보 유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음
- 피고는 2021. 6. 21.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하여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1. 8.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 승
 -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 원심: 원고 패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규정 해석·적용 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이유의 요지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실증)에 따라 한다. (단서 생략)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서 생략)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

한 투기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음.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1)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만약 법령상 근거 없이이루어진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음. 원심과 같이 원고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로서는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 받지 못하여 주택을 처분

¹⁾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다가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그 조사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4. 판결의 의의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 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와 반영할 수 없는 요소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음